



국제환경협약의 이해

2차시

1. 국제환경법 동향

1.1.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발전

1) 국제환경법 개념

- ① 환경문제가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사회의 공동문제라는 인식 확산으로 국제환경법 발전
- ② 환경법 정의와 관련하여 법학자들 간 상이한 주장
 - 일부 법학자들은 환경문제에 대해 배타적 원칙에서 비롯된 법원(source of law)을 가진 환경법 체계가 없음을 주장
 - 다수 학자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구별된 법체계(a distinct body of law)가 존재한다고 주장
- ③ 일반적으로 국제환경법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국제법 전부를 포괄

2) 국제환경법의 발전

① 국제환경법의 기원

- 국제환경법의 기원은 19세기 중 체결된 양자 간 어업조약들 및 1893년 태평양 물개사건의 중재판정 등에서 찾을 수 있음
- 1902년 체결된 “농업에 유용한 조류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야생동물 보호와 관련된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약으로 기록됨
- 1909년 미국과 캐나다간 국경하천에 관한 협정이 대표적 국경하천조약으로 기록됨
- 진정한 생태적 관점에서 체결된 최초의 국제조약은 1933년 “자연상태의 동식물의 보존에 관한 런던협약”
- 1954년 석유로 인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런던협약”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대표적 노력
- 1959년 체결된 “남극조약”에서는 남극대륙에서의 동식물 보호를 위한 조치를 채택

- 1941년 Trail smelter case 중재판정에서는 “어느 국가도 배출가스를 타국의 영토나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도록 자국의 영토를 이용하거나 이용되도록 허용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고, 1949년 Corfu 해협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IJC)는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권리에 반하여 자신의 영토를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초기 국제환경법 발전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만드는 선례를 남김

② 국제환경법의 발전 과정

- 1960년대 생물권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한 과학적 경고가 제기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의 압력 증대 및 각 정부의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 1968년 유엔이나 일부 지역협력기구들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및 담수보호 등을 위한 지역환경협정 체결 시작
-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는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포괄적 인식을 공유하고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국제환경법 발전에 기여
- 1970년대에는 ‘습지보호에 관한 람사르협약’, ‘남극 물개보전을 위한 런던협약’, ‘멸종위기의 종 보호를 위한 워싱턴협약’, ‘야생이동성 동물의 보존에 관한 본 협약’, ‘국경을 넘는 광범위한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 등 체결
- 1982년 'UN 해양법협약'을 통해 해양환경보전에 속하는 사항을 광범위하게 발전시켰고 같은 해 “세계자연현장”의 채택으로 현재 및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한 자연보존에 관한 국가 책임을 선포, 1985년에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협약과 더불어 지역 차원의 다양한 환경협약 채택
-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의제21을 채택하였고, 본 회의를 전후하여 1989sus 유해폐기물 교역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1992년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새로운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었으며, 기존 환경협약도 규정이 보다 강화되기 시작
- 국제환경법은 197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여 아직도 발전단계에 있는 국제규범

1.2. 국제환경법의 특성

1) 다른 영역과의 연계성

- ① 환경문제가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다양한 분야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아야 하는 본질적 특성을 지님
- ② 해양, 내수, 대기 등 환경의 각 부문을 규제하는 규범이 있지만 최근 각 부문을 통합하여 접근하는 추세를 보임

2) 낮은 강제성

- ① 조약의 형태로 체결된 경우 구속력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GATT/WTO 협정과 같이 이행의 강제성이 강하지 못한 soft law의 특성을 가짐
- ② 대개 상당한 정치적 약속 형태로 체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법에 따라 강제성을 동반한 환경협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음

3) 국제기구의 역할 중요

- ① 국제기구의 행위는 대부분 구속력을 갖지 않는 권고에 해당하는 형식이지만, 실제로 국제사회의 행위에 영향을 주고 관습법 형성에 기여하며 조약체결의 기초가 됨으로써 중요한 보조법원 역할을 함
- ② 극소수의 국제기구만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를 채택할 권한을 가지며 규칙(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 권고, 의견 등 다양한 형태의 일방행위를 가짐
- ③ 주요한 예로 UN 안전보장이사회, OECD, EU 등의 기구들은 지속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들을 채택해 왔으며, 그 밖의 권고, 행동계획, 원칙선언 등은 구속력이 없으나 궁극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범 작성의 전단계 역할을 함으로써 국제환경법 발전에 기여

2. 국제환경협약의 기본원칙

2.1.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1) 개념 및 의의

- ①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은 국가가 자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 하에 있는 활동으로 인해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관할권 지역의 환경에 손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할 책임을 의미
- 국가의 관할권 또는 통제 하의 활동인 한 그것이 국가 자신의 활동인가 혹은 사적인 활동인가는 무관
 - ※ 관할권(jurisdiction)의 개념은 영토주권보다 넓은 개념으로 국가주권이 미치는 육지 영토, 영해 및 영공 외에 접속수역, 군도수역, 바다적 경계수역, 대륙붕 등과 같이 국가의 제한적인 권한이 미치는 지역을 말하며, 국가의 통제(control) 하에 있다는 것은 선박에 대한 등록국의 일정한 권한과 항공기, 우주발사 등과 같이 국가영토 또는 관할권 이원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등록국이 그에 대한 일정한 권한행사가 가능한 것을 의미
 - 환경침해 대상은 다른 국가의 영토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국가의 관할권도 미치지 않는 공해, 삼해저, 우주공간 및 천체, 남극 등과 같은 인류 공동의 지역도 포함하기 때문에 국가는 당연히 이들 지역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규제할 책임을 부담
- ② 이 원칙은 가장 오랜 법규형성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확고하게 관습법적 지위에 오른 것으로 인정되고 국제 환경법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 평가됨
- 이미 1949년 UN 국제법조사보고서는 “국제법에 반하는 방법으로 다른 국가의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영토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결론 내림

2) 원칙의 적용

- ① 협약에의 적용

- 1951년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는 국경을 넘어 식물군 및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선언
- 1968년 “아프리카 환경보존협약”에서는 개발계획으로 인해 다른 국가의 자연자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협의와 협력을 요구
- 1972년 “세계자원 및 문화적 유산 협약”은 타 당사국 영토에 존재하는 유산에 직간접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고의적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규정

② 스톡홀름 환경선언

- ‘스톡홀름 환경선언’은 본 원칙의 지평을 넓힌 주요 계기가 됨
 - ※ 스톡홀름 환경선언의 'Principle 21'에서는 각 국가의 관할권 혹은 통제 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나 영역의 환경에 해를 입히지 않을 의무를 갖는다는 점을 명시
- 공해, 우주공간, 천체 및 심해저 등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해서까지 환경침해방지 책임을 부과하여 초국경적 상황에서의 적용을 극복
- 오염방지의 책임과 국토이용에 대한 주권적 권한을 대응시켜 무제한적 주권행사에 대해 제재
- 이 규정형식은 이후 “국가의 경제적 권리의무헌장”, “헬싱키 유럽안전보장 및 협력에 관한 회의 최종결정”, “세계자연헌장”, “제3차 해양법협약”, “아세안 자연 및 자연자원보존협약”, “원거리 초국경 대기오염협약”, “리우선언” 등 많은 국제법 문서에 반영

2.2. 국제협력의 원칙

1) 개념 및 의의

- ① 국제환경협약 원칙으로서의 “국제협력의 원칙(Cooperation Principle)”
 -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선린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국제환경 보호와 증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
 - 환경오염의 긴급상황에서 영향이 미칠 다른 국가에 위협상황을 고지할 의무와 조력할 입장에 있는 국가가 긴급상황에 처한 국가에 지원할 의무

- ※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러한 고지의무의 근거가 “인도(humanity)의 기본적 고려”라는 일반원칙임을 밝힘
 - 국제환경보호를 규제하는 국제법의 준수와 새로운 국제법 발전을 위한 협력의무
 -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시행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정보를 제공하여 협의하며, 필요한 경우 의사반영의 기회를 주는 절차적 의무 등을 포함

②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원칙

- 국제사회에서 선린·협력 의무는 UN 헌장에서 “UN 가맹국은 사회적, 경제적 및 상업적 사행에 관하여 선린주의의 일반원칙에 기반을 두도록 하는데 동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협력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음
- 국제환경보호, 특히 공기나 물 등과 관련된 오염원의 이동은 정치적 국경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므로 한 국가의 독자적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국제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2) 원칙의 적용

- ① 국제협력 의무는 대부분의 국제환경법 문서에서 기본정신으로 언급되고 있음
 - “OECD의 초국경 의무에 관한 원칙선언”, “유류오염사고시의 공해 상에서의 간섭에 관한 협약”, “핵사고 또는 방사성 비상시의 보조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이 이런 의무내용을 담고 있음
- ② 일부 문서에서는 국제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적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 스톡홀름 선언에서는 “국가는 국가의 관할권 또는 통제 내에 있는 활동으로 그들 관할권 이원지역에 야기된 오염 또는 기타 환경피해의 피해자를 위한 책임 및 배상에 관한 국제법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협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제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적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문서화
 - ‘리우선언’에서는 국제협력의 한 형태가 이 분야의 국제법 발전에의 협력임을 명시
 - 이외에도 “헬싱키 안전보장 회의 최종결정”, “국가의 경제적 권리의무 헌장”, “세계자연헌장”, “노르딕환경보호협약”, “아마존협력을 위한 조약” 등에서 언급

2.3. 사전예방의 원칙

1) 개념 및 의의

- ①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은 환경문제에 관한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으로 과학적 확실성이 확보되기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잠재적인 환경피해가 사전에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선행적 차원에서 행동해야 함을 의미
- ② 두 가지 차원에서 언급 가능
 - 돌이킬 수 없는 손해의 심각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환경적 피해의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될 수 없는 범위와 활동이 허용되어서는 안됨
 - 그러나 이런 행동들이 허용되면 제기된 활동에 대해서 오염을 금지하고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하고, 청정기술과 올바른 관리제도를 통해 위험을 줄여야 함

2) 원칙의 적용

- ① 해양오염분야
 - 예방적 원칙은 해양오염분야에서 최초로 주장됨
 - 다수 국가에서 해양오염규제의 전통적 방식은 해양이 가지는 정화능력에 기초하여 허용되는 투기량을 산출하는 것이었으나, 사전예방원칙 지지자들은 이러한 방식이 불충분함을 주장
 - 해양환경에 안전하게 흡수될 수 있는 오염량을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투척량이 장기적으로 손해를 끼칠 수도 있음
 -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가능한 한 해양환경으로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예방적 원칙 주장
- ② 기후분야
 - 환경문제가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포함할 경우 더욱 일반적으로 사전예방원칙이 적용됨
 - 기후학에 대한 불확실성은 오존층 파괴 문제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더욱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하게 하는 요소임

- 그러나 최근 국제회의 등에서 사전예방원칙의 통일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를 도출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

2.4. 오염자 비용부담 원칙

1) 개념 및 의의

- ① “오염자 비용부담 원칙(Polluter-Pays-Principle)”은 오염을 야기한 책임이 있는 주체가 오염비용과 그 결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개념
 - OECD와 유럽연합의 많은 문서들을 통해 본 원칙이 언급됨
 - ‘리우선언’은 본 원칙에 대해 “국가는 공공이익에 대한 적절한 고려와 국제무역 및 투자를 왜곡함 없이 원칙적으로 오염자가 오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접근방법을 고려하여 환경비용의 내재화와 경제적 수단의 사용을 증진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선언
- ② OECD는 보다 상세한 개념으로 정리
 - OECD는 “오염방지와 부족한 환경자원의 합리적 이용, 그리고 국제무역과 투자에 있어서의 왜곡을 피하기 위한 통제조치를 위한 비용에 대한 원칙”으로 규정
 - 이는 공공당국이 환경을 받아들일 만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결정한 조치를 수행할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해야 함을 의미
 - 오염자 비용부담 원칙은 오염이 발생하였을 때 책임에 대해 배상하는 원칙과는 다르며, 오염통제비용의 배분을 위한 원칙

2) 원칙의 적용

- ① 본 원칙의 적용을 위해서는 실제 상황에서 오염자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 “오염자가 누구인가”의 문제에 대해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는 “직접적으로 환경에 손해를 입힌 자” 혹은 “그러한 손해의 조건을 야기한 자”로

정의

- 그러나 자동차에 의한 오염, 생활오수에 의한 오염과 같은 집단적 오염자의 경우는 오염자를 밝히기 어려움
- 유럽연합은 이러한 경우 경제적 효율성 및 행정적 효율성을 고려하고 비용을 감당할 능력을 고려하여 비용배분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② 다양한 국제법 문서들에서 본 원칙이 적용됨

- 본 원칙을 언급하고 있는 국제법 문서들로는 “아세안 자연 및 자연자원 보존협약”, “알프스 보호협약”, “UN 유럽경제위원회 초국경 하천협약”, “발트해협약” 등이 있음
-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오존층 보호를 위한 협약”과 “기후변화협약” 등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았던 선진국이 더 큰 의무를 부담하여 재정적 기여 및 기술이전 등을 약속한 것이 적용의 예라 할 수 있음

2.5.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

1) 개념 및 의의

①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은 인류가 공유한 환경에 대한 보호책임을 인류가 공동으로 부담하지만 구체적인 책임의 정도는 환경파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할 수 있다는 원칙

- ‘리우선언’은 “국가는 지구생태계 건강과 통합성을 보존·보호 및 재건하기 위해 세계적 동반자적 정신에서 협력해야 하고, 지구환경침해에 미친 서로 다른 영향을 고려하여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을 진다. 선진국은 그들 선진사회가 세계 환경에 그동안 미친 영향과 그들이 운영하는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국제적으로 추구함에 있어 그들이 부담한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힘

② 본 원칙은 두 가지 내용을 포함

- 첫째, 환경보호를 위한 공동의 책임
- 둘째, 환경에 그동안 각 국가가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차별적 책임 부과

※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은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and Respective Capability(CBDR-RC)로도 언급이 되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각자의 능력을 포함하여 책임부과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필요성이나 경제적 능력 등을 함께 고려하는 개념으로 언급되기도 함

2) 원칙의 적용

- ① '리우선언' 이전의 국제법 문서에서도 규정
 - 공동책임의 원칙은 심해저를 규율하는 "제3차 해양법협약", 지구 생태계 보존을 위한 "세계자원 및 문화유산 보호협약", "생물다양성 보존협약" 등에서 규정
 - 차별적 책임 원칙과 관련해서는 "유해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협약"에서 당사국들이 과학기술 및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의 경제적 권리의무현장",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 등에서 규정
- ②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능력(CBDR-RC) 원칙으로 언급되어 공동의 책임과 더불어 책임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되 각자의 능력을 고려하는 사항까지 포함한 원칙을 명시

2.6.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1) 개념 및 의의

- ①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은 의미가 불명확한 개념이나 현재도 지속적으로 논의중임
 - 누구를 위한 개발과 보전인가의 문제에 대해 '세대 간 평등 원칙'과 관련하여 현 세대만을 이익의 주체로 하는지 미래세대도 고려하는지의 문제
 - 또한 자연자원도 하나의 이익 주체로서 인정되어야 하는지의 문제
 - 무엇을 보전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인간 사회 및 경제 뿐만 아니라 자연자원으로 그 대상 범위를 넓혀가는 추세

- 어떻게 보전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환경, 경제, 사회가 조화롭게 통합하는 방향으로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 형성

②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한 논의 의제는 매우 광범위함

- 인구증가와 빈곤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들이나 해양, 대기, 토양, 생물다양성 등 각종 환경이슈, 국제환경 관련 제도, 법체계 및 재원, 기술이전 등의 이행수단 등 복잡한 이슈 포함

2) 파생원칙

① 세대 간 평등의 원칙

-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류가 지구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됨에 따라 미래세대의 생존에 상당한 위협요인이 됨
- 현재 지구에서 살아가는 인류는 주어진 환경을 사용함에 있어 미래세대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담
- ‘스톡홀름 환경선언’은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존하고 증진할 엄숙한 책임이 있다”고 선언
- ‘세계자연헌장’에서는 현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자연유산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밝히고 이를 위한 원칙 규정
- ‘리우선언’은 스톡홀름 선언에서 언급된 원칙들을 재확인

② 자연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원칙

- 자연자원과 환경의 재생능력을 고려하여 그들의 적절한 양적·질적 상태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자연자원 및 환경을 이용해야 한다는 개념
- ‘스톡홀름 선언’에서는 “재생가능한 자연자원의 비소진”과 “재생가능한 자연자원을 생산하는 지구의 능력 제고” 등을 요구하여 간접적으로 자연자원 및 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원칙을 선언
- ‘세계자연헌장’은 “이용되는 자원은 지속가능한 최대 생산성을 달성하고 유지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생물자원의 재생산을 위한 자연능력을 초과하여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

- '리우선언'에서는 국가와 지구 가족이 지속가능한 개발분야에서 국제법의 보다 심화된 발전을 위하여 신의성실과 동반자정신으로 협력하도록 규정

③ 환경과 개발 통합의 원칙

- 경제 및 기타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환경적인 면을 고려하고 환경의무를 입법화하고 적용하며,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경제 및 기타 개발의 필요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
- 1949년 개최된 '자원의 이용과 보존에 관한 UN 회의'와 더불어 1971년 '국제연합총회'에서 "국내 및 국제 모든 차원에서 개발계획은 건전한 생태계와 양립적인 것이어야 하며, 국내 및 국제 모든 차원에서 적절한 환경조건은 개발의 증진에 의해 가장 잘 보장될 수 있다"고 결의
- 이후 '스톡홀름 선언'과 '세계자연현장' 등을 통해 유사한 내용이 규정됨
- '리우선언'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보호는 개발과정에서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분리하여 고려될 수 없다"고 선언
- 최근에는 지속가능 개발 개념에 대해 환경과 경제의 양립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도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환경, 경제, 사회를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세 가지 주요 축으로 인식하는 데 공감대 형성